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902
------------	------

2024년 6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자 : 2024년 5월 27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라. 상정일자

○ 제324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4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가. 제안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개정예 따라 유상운송의 허가권이 국토부장관에서 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유상운송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위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운송의 신청 및 허가절차, 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계획변경, 허가기간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 법령 인용 문구를 정비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 평가 등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위탁 규정 신설(안 제21조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4. 4. ~ 2024. 4. 24.
- 제출의견 : 없음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의 개정<sup>1)</sup>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권이 국토부장관에서 시장으로 이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에 유상운송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탁 근거를 함께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관련 신·구법 대비표 (시행 '24.7.10.)

현 행	개 정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생략)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의</u>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u>국토교통부장관은</u> <u>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u> 붙일 수 있다.	② ----- ----- ----- <u>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의</u> ----- ----- . ----- <u>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u>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2호, 2024. 1. 9., 일부개정] [주요 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특례의 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등 -이하 생략-

## 나. 검토의견

### ■ 상위법 개정 배경

- 현행 법 제9조제1항2)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 제81조3)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영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특례 사항을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유상 운송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권은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었음
  
- 하지만, 법 제9조제3항4)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5)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노선을 운행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정운수면허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어<sup>6)</sup>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 
-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영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영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③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범운영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6)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1조(면허신청 등)

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추진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허가권이 일부만 이양되어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에 중앙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 특례의 권한을 국토부장관에게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관련 법을 개정할 것임

## ■ 정의 관련(안 제2조)

- 현행 조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sup>7)</sup>를 정의하기 위해 법 제7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법의 구체적인 항까지 규정하는 것보다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개정하여 전반적인 상위법의 규정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관련(안 제4조·5조)

- 서울특별시장은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관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

①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범운영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시범운영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이하 “시범운영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sup>8)</sup>하고 있으나 법 개정에 따라 향후 시·도지사의 권한이 되는 유상운송 허가권에 대한 내용과 한정 운수면허 발급·연장·정지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새롭게 심의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밖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구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 할 것임

## ■ 면허신청 관련(안 제11조)

- 현행 조례에서는 법 제9조제3항<sup>9)</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 2호<sup>10)</sup>의 규정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

8)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하 생략-

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와 해당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을 조례에 인용함에 있어 세부적인 항과 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안들을 정비하고 법령명에 대한 약칭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며

자율주행 관련 유상운송 허가권자가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면허신청 등”을 “허가 또는 면허신청 등”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내용 중 “한정운수면허”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등으로 개정하여 상위 법의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또한,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sup>11)</sup>에 따라 교통안전 등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 사업계획 변경 및 면허기간 연장(안 제12·13조)

- 현행 조례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sup>12)</sup>하거나 면허기간 연장<sup>13)</sup>과 관련된 사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법

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영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2)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2조(사업계획 변경)

① 제11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노선·시간·요금 등 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3)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3조(면허기간 연장)

① 제11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 권한 이양이 예정되어 있는 유상운송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현행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각 항과 각 호에 “한정운수면허”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업무의 위탁(안 제21조)

- 동 개정조례안은 자율차 운행을 위해서는 교통현황 조사, 자율차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고 매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sup>14)</sup>를 통해 계획 달성도, 규제효과 등 시범운행지구와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 높이기 위해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연구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해되나 이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자율주행과 관련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민간위탁과 관련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추진해야 할 것임

---

우에만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2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개정  
에 따라 유상운송의 허가권이 국토부장관에서 시장으로 위임됨  
에 따라 유상운송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  
무위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운송의 신청 및  
허가절차, 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계획변경, 허가기간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 법령 인용 문구를 정비함(안 제11조부  
터 제13조까지)

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 평가 등의 효율적 업무 수  
행을 위한 업무 위탁 규정 신설(안 제21조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원안가결)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원안동의)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  
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 4. 4. ~ 4. 24.)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김진구 (☎ 02-2133-496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연장, 정지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포함하여 15명 이내로”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 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5호) 가목 중 “안전관리요원”을 “시험운전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한정운수면허”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로 한다.

1. 규칙 제7조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보험의 가입증서,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제11조제2항 중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그 발급과 연계하여”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시”로, “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을 포함하여 60일”을 “60일(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 포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 영 제8조제3항”을 “법 제9조와 영 제8조”로, “한정운수면허의 기간”을 “기간”으로, “정하여”를 “정하여 유상운송을 허가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운수면허”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로, “운행노선·시간·요금 등 시장에게”를 “운행지역·노선·시간·요금 등 이미”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허가 기간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등) ① 제11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 기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2. 그 밖에 시장이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③ 시장은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을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법 제17조 등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관련 지원 업무
2.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관련 안전운행 검증 기준 마련 지원 업무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실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연장 기간			
필요성 및 사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의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영 실적 및 성과 등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확인 및 협의	→	의사 결정	→	허가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u>제7조제1항</u>에 따라 지정된 구역·노선을 말한다.</p> <p>2. ~ 5.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 ~ 3. (생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① ----- -----.</p> <p>1. ----- ----- ----- ----- <u>제7조</u>----- -----.</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회의 설치)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연장, 정지 등에 관한 사항</u></p>

4. (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범운행지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생략)

제11조(면허신청 등) ① 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말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 ① 법 제9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

1.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2.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

5. 안전운행 및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

가. 안전관리요원 탑승 등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나. (생략)

다.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 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라. ~ 바. (생략)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7조에 따른 여객운송 계획서, 보험의 가입증서,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삭제>

<삭제>

<삭제>

2. -----  
-----  
-----  
-----

가. 시험운전자 -----  
-----  
-----

나. (현행과 같음)

다.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  
-----

라. ~ 바.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그 발급과 연계하여 안전운행 검증을 위해 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9조의 안전분과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제2항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9조제3항, 영 제8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정운수면허의 기간 및 운행범위 등을 정하여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사업계획 변경) ① 제11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노선·시간·요금 등

② -----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시 -----  
--- 60일(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 포함) -----  
-----  
-----  
-----  
-----.

③ -----  
-----  
----- 법 제9조와 영 제8조 -----  
-----  
----- 기간 -----  
----- 정하여 유상운송을 허가하거나 -----.

④ 시장은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 변경) ① -----  
-----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

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③ (생략)

제13조(면허기간 연장) ① 제11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한정운수면허가 만료되는 6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

--- 운행지역·노선·시간·요금 등 이미 -----

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허가 기간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등) ① 제11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

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2. 그 밖에 시장이 면허기간 연  
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③ 시장은 면허기간 연장의 필  
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면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  
구획)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  
차 산업의 발전과 유상운송사업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범운  
행지구 내 서울특별시가 운영하  
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  
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정운수면허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  
적 및 성과

2. 그 밖에 시장이 유상운송 허  
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③ 시장은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  
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  
구획) ① -----  
-----  
-----  
-----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가 -----  
시 출자·출연기관-----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자율  
주행자동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법 제17조 등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관련 지원 업무

2. 자율주행자동차 유사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관련 안전운행 검증 기준 마련 지원 업무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실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비 용 추 계 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의 허가가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
- 이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수성(고가의 차량, 시범운행 전자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자가용 유상운송 초기 손실이 불가피함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발전 및 지속가능한 유상운송 모빌리티 창출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함
- 다만,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모빌리티 발전과 연계하여 자율주행 업체 스스로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초기 3~4년 정도만 지원할 예정임

2. 비용추계는 시 조례에 따라 기술발전지원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국비 50% 지원을 근거로 함

- 승용차 기준 기술발전지원금 : 대당 49,830천원/연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지출	유상운송 사업 지원	300,000	249,150	498,300
	소계(b)	300,000	249,150	498,300	747,450	1,794,900
수입	국비	150,000	124,575	249,150	373,725	897,450
	소계(a)	150,000	124,575	249,150	373,725	897,450
□ 총 비용(a-b)		150,000	124,575	249,150	373,725	897,45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국비	150,000	124,575	249,150	373,725
시비	지방세수입	150,000	124,575	249,150	373,725	897,45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300,000	249,150	498,300	747,450	1,794,90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김진구(02-2133-4963)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지원

- 1차년도 : 3대 \* 100,000천원/년 = 300,000천원(1차 년도는 초기 실증용역비)
- 2차년도 : 5대 \* 49,830천원/년 = 249,150천원
- 3차년도 : 10대 \* 49,830천원/년 = 498,300천원
- 4차년도 : 15대 \* 49,830천원/년 = 747,450천원